발행·편집 : 기획감사실 홍보담당 (☏ 440-2221, FAX 440-2583)

화 천 군 군 보

www.ihc.go.kr

제300호 2021년 7월 16일

선람	기관의 장

공 고 문

1. 화천군의회 포상 조례 --- 10
2. 화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--- 12

21년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(2021.7.8.) 및 제264회 화천군의회(제1차 정례회) 에서 심의·의결된 화천군의회 포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1년 7월 16일

화 천 군 수 최 문 순 직인생략

화천군 조례 제2586호

화천군의회 포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화천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포상대상) 포상은 지역사회 및 화천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발전에 공헌한 군민(”외국인“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, 공무원 또는 기관·단체에 행한다. 다만, 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·단체에 수여할 수 있다.

제3조(포상권자) 포상은 의회 의장이 행한다.

제4조(포상의 종류) 포상은 표창장, 감사장,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, 필요할 경우 패 등으로 시행할 수 있다.

제5조(표창장) 표창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.

1. 의정 발전 및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경우

2.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

3.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대상자를 기관·단체 등에서 추천하거나 요청하는 경우

4. 그 밖에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
제6조(감사장)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.

제7조(상장) 상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.

1. 각종 품평회, 경진대회,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

2. 학술·예술·체육,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

3. 각종 성적이 우수하여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

제8조(포상시기) 포상은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기관·단체 등에서 포상 추천이 있을 때 수시로 할 수 있다.

제9조(포상방법)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.

제10조(포상대상자 추천) 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 또는 기관·단체의 장이 추천한다.

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1조(공적심사위원회) ① 의장은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화천

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화천군의회 부의장으로 한다.

③ 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이 된다.

제12조(공적심사) 포상은 공적조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. 다만, 감사장,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.

제13조(이중 포상금지) 포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.

제14조(포상대장의 기록·관리)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화천군의회 포상규정은 폐지한다.

(별지 제1호 서식)

제 호

표 창 장

주소 또는 소속
직위 성명

(표 창 문)

년 월 일

화천군의회의장 ○ ○ ○

(별지 제2호 서식)

제 호

감 사 장

주소 또는 소속
직위 성명

(감 사 문)

년 월 일

화천군의회의장 ○ ○ ○

(별지 제3호 서식)

제 호

상 장

주소 또는 소속
직위 성명

(상 장 문)

년 월 일

화천군의회의장 ○ ○ ○

(별지 제4호 서식)

공 적 조 서

(앞면)

(1) 성 명	(한자)		
(2) 생년월일		(3) 군 번 (군인인 경우)	
(4) 본적(국적)			
(5) 주 소			
(6) 직 업		(7) 소 속	
(8) 직 위	(9) 직급·계급		(10) 공 적 기 간
(11) 공적요지	⑫ 공적분야코드		
(13)추천훈격		(14)추천순위	
조 사 자			
(15) 소 속		(16) 직 위	
(17) 직 급		(18) 성 명	(인)

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

주요학력 및 경력			
년 월 일	이 력	년 월 일	이 력
과거 표창기록 (훈장・포장・표창별로 기록)			
년 월 일	내 용	년 월 일	내 용
공 적 사 항			

(별지 제5호 서식)

포 상 대 장

호수	포 상 년월일	포상종별	포상기간	인 적 사 항					포 상 공적개요	계인
				소속	직위	주소	성별	성 명		

1. 포상대장은 표창장, 감사장, 상장으로 구분 기재할 수 있다.

2. 포상대장은 공무원, 민간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.

2021년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(2021.7.8.) 및 제264회 화천군의회(제1차 정례회) 에서 심의·의결된 화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1년 7월 16일

화 천 군 수 최 문 순 직인생략

화천군 조례 제2587호

화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화천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

제2조(지원사업) 화천군수(이하“군수”라 한다)는 화천군 의용소방대(이하 “의용소방대”라 한다.)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 임무 수행
2. 각종 소방기술 경연대회의 개최 또는 참가
3. 소방 및 안전 관련 봉사활동, 캠페인 등을 위한 소요경비
4.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

인정하는 사업

제3조(지원신청 및 결정) ① 의용소방대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, 타당성,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, 그 결과를 의용소방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
제4조(중복지원 금지)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.

제5조(포상)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·구호 활동,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 「화천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6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「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